

산업통상부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위탁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위원회 전 단계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나 신청반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규제특례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제출을 명문화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안 제4조)

- 1) 규제샌드박스 지원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기관의 업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을 조정하거나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 3) 지원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규제특례 사후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1)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전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 전 심층적인 사전 조율이 필요함.
- 2) 산업부 공무원과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 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청안전의 반려 검토 및 심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3) 전문위원회의 심의 부담이 완화되고 복잡한 쟁점의 사전 정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전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신청인 의견 제출권 강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부처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관계기관 검토결과를 받은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함.
- 2) 안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여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 직권 또는 출석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심의를 보류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행정기관 간 협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의견제출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기관 평가)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1조의8 제1항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업무 수행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 처리 지원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위원회 추천 위원의 전문성, 중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 검증 노력
3. 기업 컨설팅 등 지원업무의 전문성 및 성과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리 · 감독 지원업무의 적정성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조정하거나 영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게 위탁한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문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사전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전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의3제3항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영 제11조의3제4항 및 영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신청 반려에 관한 검토
3. 사회적 영향력이 큰 신청 사안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전검토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⑥ 사전검토위원회 간사는 검토·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영 제10조제6항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게 할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제7항 및 제10조제8항 관련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직권 또는 출석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1.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여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8조(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결과를 규제특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규제특례 신청인은 그 검토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

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③ 규제특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지원기관 평가)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1조의8제1항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업무 수행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u> <u>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 처리 지원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u> <u>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위원회 추천 위원의 전문성, 중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 검증 노력</u> <u>3. 기업 컨설팅 등 지원업무의 전문성 및 성과</u> <u>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리 · 감독 지원업무의 적정성</u> <u>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u>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 까지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절</u>

<신 설>

차에 관한 사항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 결과
에 따라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조정하거나 영 제11조의
8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게 위
탁한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다
만, 위탁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
문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
토·조정·처리하거나 전문위
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검토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전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규제샌
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의3제3항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영 제11조의3제4항 및 영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신청 반려에 관한 검토

3. 사회적 영향력이 큰 신청 사안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전검토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⑥ 사전검토위원회 간사는 검토·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다.

제6조(사전협의) 영 제10조제6항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앞
서, 전문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게 할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영 제10조제7항 및 제10
조제8항 관련 전문위원회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부결 여부를 결
정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직권 또는 출석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심의를 보류할 수 있
다.

1.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술
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 조
율이 필요하여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제8조(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산업통

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회신받은 검토결과를 규

제특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규제특례 신청인은 그 검토결과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③ 규제특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